

부산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639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6393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단32563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탐승

피고, 피항소인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박희원

3. 학교법인 D

피고 1,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이

담당변호사 최청희

변론종결 2021. 10. 7.

판결선고 2021. 12. 16.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단32563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11,833,747원, 피고 C은 14,237,884원, 피고 학교법인 D은 10,779,2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부터 제18행의 “피보험자들이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병원에서 받은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가 위와 같은 요양급여 대상에 관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여기에 을나 제1 내지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병원에서 피보험자들이 받은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가 위 요양급여 대상에 관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하지만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참조).

2)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보전하려는 권리인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전채권인데, 원고는 피보험자들의 자력 유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3) 한편, 원고가 보전하려는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피보험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발생 원인에 있어 사실상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보험자들의 자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보험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들은 원고가 아닌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단료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피고들이 아닌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이 진단료를 지급받은 것은 피보험자들과의 진료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위 진료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원고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와 피보험자들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보험계약상 약관의 해석 등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즉,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피고들의 진료행위를 두고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대위권리가 먼저 인정되어야 하는 등으로 양자 사이에 법률상·계약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채권자대위권에서 말하는 ‘보전의 필요성’이란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채권자의 채권회수의 편의를 위한 경우는 위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피보험자들에 대한 개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집합된 것에 불과한바, 이와 같이 다수의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하나의 요양기관을 상대로 피대위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보전의 필요성은 환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합계가 다액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원고가 피보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의 경과 및 결과, 원고로부터 환수된 보험금의 액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은 피보험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것을 예상하여 원고가 직접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대위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목명균, 판사 이순혁